

#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 경과

가 2006. 10. 16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10. 16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66호)

다 2006. 10. 24 :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,  
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담당관 김영고)

### 가 제안이유

-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과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나타난 운영상 중복되는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 주요내용

- 1) 기금의 집행 범위를 정한 조항 삭제  
⇒ 기금의 집행은 목표액 조성시까지 2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조항 삭제(조례 제42조제3항)
- 2) 기금의 지급 범위 조정  
⇒ 중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 신설(제9조)
- 3)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조항 삭제  
⇒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「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학교 지원(제5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6조)
- 4)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요건을 하향 조정(조례 제14조)

### 다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개정조례안은 2006. 1. 10 「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」 제정 시행으로 중복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조문 및 기금의 집행한도액 삭제와 기금의 지급 범위를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(제14조)을 축소 조정코져 하는 것으로서
-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수장학생의 면학의욕을 고취시켜 21C 사천시를 빛낼 중추적 인재가 육성될 것으로 기대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: 없음